

2015년도 반부패 청렴 TF팀 3차 회의

- 일 시 : 2015.04.15(수), 11:00
- 장 소 : KISTEP 9층 회의실
- 안 건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체계
 - 2015년도 반부패 수범사례 검토
 - 차기회의 일시

2015. 04. 15

2015년도 반부패 청렴 TF팀 3차 회의

1.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체계
 - 3대 평가영역, 8개 평가부문, 19개 단위과제, 64개 세부과제
('14년도 : 3대 평가영역, 8개 평가부문, 19개 단위과제, 58개 세부과제)
2.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여부 검토
 -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20건)
 - 권익위가 제시한 수범사례 도입건수 1건 당 2.5점 부여
 -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54건)
 - 54건 중 55% 이상 도입 시 만점(30점) 부여
 - *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되, 각 사례의 추진 배경, 철학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변형 가능
3. 청렴 옴부즈만 운영
 - '15년의 경우 2회→4회 이상의 운영 실적을 요구
 - 규정상 2회 정기모임(반기별), 사안별 2회 이상 비정기 모임 예정
 - 시정·감사 요구, 공표권(적극적 권한) 및 감사참여, 건의, 의견제시(소극적 권한) 등을 인정
 - 2015.4.21.(화) 제1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예정
4. 청렴서약식 실시
 - 권익위 권고에 따라 임직원 전원 청렴서약 실시('15.10월까지)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
5. 청렴교육 이수
 - TFT 전원 교육이수 시까지 신청예정
6. 차기회의 일시 - 5월 중 개최 예정

2015년도 반부패 수범사례

①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목록(20건)

지정 번호	수범사례	비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기반 구축 노력		
1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	
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	
3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 관련 행위 제한		
4-1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의 적용범위를 파견근로자로 확대	
4-2	교육기관 종사자(사립학교 교직원, 비정규직 등) 윤리행동강령 제정	
5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	
◇ 이해충돌 차단장치 강구		
6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제정 및 실시	
7	조사담당공무원의 사적 관계 사전고지 의무	
8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간 불필요한 사적 접촉 제한	
9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10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 등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11	사건관계인(직무관련자)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등	
12	고위직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규정 도입	
13	직무관련자와 공적·사적 국외여행 사전 심사(예외적 승인)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14	부패행위 제·수사자에게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제 도입	
15	부패행위자, 조사분야 보직 영구 금지	
16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규정	
17	부패행위자 승진임용 제한 규정 강화	
18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 청렴공직자 우대 및 부패취약업무 특별관리 시스템 구축		
19	청렴마일리지 운영 및 승진 가점화	
20	부패위험 관리체계 운영	

②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목록(54건)

지정 번호	수범사례	비고
◇ 부패 취약분야 종합 관리체계 구축		
1	상시 e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청렴담당부서에서 직원 인사 운영 시 사전검증 절차 운영	
3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전수 실시	
◇ 이해충돌 차단장치 강구		
4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지연, 학연 포함	
5	직원이 관계된 업체와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수의계약 제한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또는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계약체결 제한	
6	퇴직 직원의 재취업 관련 행동강령 제정	
7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마련	
8	퇴직자에 대한 특혜금지를 위해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9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	
10-1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명문화	
10-2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명문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신고	
11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도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 기재 의무화	
12	재산등록 대상 확대	
13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인사청탁 등 금지	
◇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14	기술평가위원 자동선정교섭 시스템 구축·운영	
15	감사사례를 DB화하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16	홈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적발 사례 등)의 즉시 공개	
17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를 외부에 공개	
18	정보공개 부정행위(거짓 정보공개, 불이행 등)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예산낭비 방지장치 강구		
19	모든 수의계약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20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1	예산낭비 신고내용 조치결과 사례집 발간 및 기관 홈페이지 공개	
22-1	공용재산 사적 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22-2	부정수급 금액의 2배 환수제 도입	
23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부서단위로 확대	

24	업무추진비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을 30만원으로 강화	
25	업무추진비 총액·건수 및 집행대상자 명단까지 공개	
26	전체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사내포털)	
27	공금횡령 방지 관련 회계부정 방지대책 실시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28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	
29	(공사, 물품, 용역 등) 사업별 청렴지킴이 운영	
30	청렴시민감사관 독립성 강화 및 시정요구안 수용	
31	산업재해 관련 소규모 사업장 실무자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관리감독 기능 강화		
32-1	산하기관 감사결과 공유시스템 구축·운영	
32-2	시·자치구 감사협의회 구축·운영	
32-3	산하기관과의 반부패 워크숍 개최	
33	전 부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자에 문자메시지 통보)	
34	산하기관(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반부패 청렴평가 강화	
◇ 민간부패 개선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35-1	공급자 행동강령 제정·시행	
35-2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정·시행	
36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퇴출제	
37	부패위험성이 높은 민간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	
3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교육 강화		
39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이 선도하는 청렴교육 실시	
40-1	기관장 주관 순회 교육 실시	
40-2	상임감사위원 순회 교육 실시	
41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42-1	직무연수·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운영	
42-2	직무연수 과정 중 일정 시간을 청렴교육에 배정	
43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명령 규정화	
◇ 참여형 청렴시책 추진		
44	실무자 회의체 상시 운영을 통한 제안활동 활성화	

45	고위공무원 청렴수준 자가 진단	
46	청렴결의 대회(청렴 서약식)	
47	청렴알리미제 운영	
48-1	반부패·청렴 Day 운영	
48-2	월1회 청렴의 날 지정 및 운영	
49	부서간 청렴경쟁시스템 운영	
50	공직자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시행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51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 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파면	
52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 시효 연장(3년→5년)	
5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 관계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	
54	비위면직자를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포함	

□ 반부패 · 청렴TF팀 3차 회의 전경

